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도병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65
------	------

발의일자 : 2025. 1. 23.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간병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실태조사 및 환수조치(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5. 2. 4. ~ 2025. 2.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노인
인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 도
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
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
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
급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